

「투자일임계약서 표준약관」

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제6조(투자일임수수료)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<별지>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(이하 “기본수수료”라 한다)를 회사에 지급한다. ②~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투자일임수수료)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서 <별지>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(이하 “기본수수료”라 한다)를 회사에 지급한다. ②~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기본수수료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의 기본수수료보다 적어야 한다.</u> <u>⑥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 <u>⑦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</u> <u>⑧ 투자일임수수료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1회로서 고객과 회사간 합의한 시기로 한다. 다만,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	투자일임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 추가
제10조(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)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.	제10조(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)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일임담당자를 선임한다. <u>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일임담당</u>	투자일임담당자의 경력제공에 대한 내용 추가

②~⑦ (생략)	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.	
<신설>	②~⑦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)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,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.	내부통제체계에 대한 규정 추가
제14조(회사의 금지사항)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1.~12. (생략) 13.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.~나. (생략) 다.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,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. 단, 주식매수권의 행사,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, 유상증자의 청약, 전환권의 행사,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.	제15조(회사의 금지사항)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1.~12. (현행과 같음) 13.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,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. 단, 주식매수권의 행사,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, 유상증자의 청약, <u>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, 교환사채의 교환청구</u> , 파생결합증권의 권리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.	위임의 예외사항을 상세하게 규정
제15조~제16조 (생략)	제16조~제17조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
제17조(계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	제18조(계약의 변경 및 해지)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 <u>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(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)을 두거나 투자일임계약의 해지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해</u>	순번이동 및 계약해지 조건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추가

② (생략)	<u>지 요구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.</u> ② (현행과 동일)	
<u>제18조</u> (생략)	<u>제19조</u>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
<u>제19조(청약의 철회)</u> ① 고객은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 ② (생략)	<u>제20조(청약의 철회)</u> ① 고객은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<u>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 및 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오타 수정
<u>제20조</u> (생략)	<u>제21조</u>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
<u>제21조(투자일임재산의 평가)</u> 제18조의 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,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(이하 “평가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계약해지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. 1.~2. (생략)	<u>제22조(투자일임재산의 평가)</u> <u>제19조</u> 의 증권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,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 (이하 “평가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준일 다음 영업일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. 다만, 계약해지 시의 평가기준일은 사전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정한다. 1.~2.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 및 조문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<u>제22조(투자실적의 평가)</u>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.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1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② (생략)	<u>제23조(투자실적의 평가)</u>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. 평가자산의 계산은 <u>제22조의</u>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 및 조문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
<u>제23조~제26조</u> (생략)	<u>제24조~제27조</u> (현행과 같음)	순번이동
(회사) 회사명 : 브랜드인베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: 이 근 길 (인) 주 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, 유니온타워 809호 사업자등록번호 : 806-81-02249	(회사) 회 사 명 : 대 표 이 사 : (인) 주 소 : 사업자등록번호 :	문구수정
<u><별지></u> 1. 계약기간 :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(1년간) 4. 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수수료 입금계좌 : 우리은행	<u><별지></u> <u>1. 계약기간 :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</u> 4. 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<u>수수료 입금계좌 :</u>	문구수정

1005-104-129624 예금주 : 브래드인베스트(주) 8. 그 밖의 사항 제19조 제2항의 “<별지>에서 정하는” 연체이자 : 연 5%	 8. 그 밖의 사항 제20조 제2항의 “<별지>에서 정하는” 연체이자 : 연 %	
---	---	--

브래드인베스트 주식회사